## C - 42 - 2020

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- (5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작업 근로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작업 근로자는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등)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및 변경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8)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(가)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과 불량품 제거
- (나) 기구·공구·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점검과 불량품 제거
- (다)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및 작업 진행 상황
- (라)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태
- (마) 악천후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

## 6. 조립 작업

## 6.1 조립작업 준수사항

- (1) 시스템 동바리 재료는 안전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, 재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는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시스템 동바리 재료는 변형·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(3) 시스템 동바리 재료를 하역·운반하는 크레인 등의 장비는 제조사의 매뉴얼 과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 정격하중 등을 준수하고,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, 자동차검사증,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, 운전원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장비의 정격하중,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시스템 동바리 조립 작업은 작업단계별 유해·위험요인을 도출하고,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